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29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 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북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고 있는바, 수여대상과 예우를 명확히 하여 충청북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”로 함.

- 도 위상 제고, 도민 생활개선 및 국제교류 공로 등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도 주최 행사 초청, 주차요금·입장료 면제 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명예도민증서 수여 받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,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과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는 2002. 5. 31.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정과 충청북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도록 정했고, 지난 2024년까지 총 549명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왔음.

【참고】 연도별 수여 현황

(단위: 명)

총 549	‘11년 이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
	213	13	15	26	23	25	16
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
	13	77	12	47	26	26	17

- 본 조례안은 제명을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”로 정하였는바, 현행 조례가 명예도민증서 수여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규정한 것에 비해, 본 조례안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에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

판단됨.

○ 안 제1조는 조례 규정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함.

- 안 제2조는 수여 대상과 관련하여 “외국, 해외교포, 타시도 인사” 등 불필요한 열거를 삭제하였음.
- 안 제3조는 수여 대상자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을 ▲도의 실장, 국장, 본부장, ▲소속기관의 장, ▲충청북도의회의장, ▲시장, 군수로 함.
- 안 제4조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결과의 충청북도의회 보고에 관한 현행 제4조제2항을 안 제5조(명예도민증서 수여)로 이동함.
-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게 반드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도록 정하였고, 명예도민증서 수여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음.
- 안 제6조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내역을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 대상자 추천, 대상자 결정,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정하였음.
- 안 제7조는 명예도민에 대한 기존 불분명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등 충청북도 조례에서 명예도민에게 보장하는 예우를 명문화하였음.
- 안 제8조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명예도민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와 관련하여, 기존 충청북도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였던 것을, 대상자 결정 절차와 합치하도록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조례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, 명예도민증서 수여 절차 및 예우 등 조례 규정 전반을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

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현행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“대우” 요소가 ▲각종 행사 초청, ▲도 소식지 제공, ▲초청강사 활용, ▲공적 홍보 등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,
- 본 조례안의 “예우”도 ▲충청북도청사 주차요금 면제, ▲청남대 입장료 면제, ▲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그치고 있어,
- 향후 명예도민의 자긍심 고취, 명예도민 위촉에 따른 충청북도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을 발굴하여 적용하려는 소관 부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.

4. 질 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(이하 “명예도민증서”라 한다)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인 사람
2. 도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
3. 외국과의 상호결연,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
4. 인재양성,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도민 화합에 이바지한 사람
5. 충청북도 소재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으로서 도, 시·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
6.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대상자 추천) ① 도의 실장·국장·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, 충청북도의
회의장 및 시장·군수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
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
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상자 결정)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
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명예도민증서 수여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
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수
여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경우에 그 결과를 충청
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기념품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 작성 및 자료 보존)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
서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추천, 제4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및 제5
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명예도민에 대한 예우) 도지사는 명예도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
우를 할 수 있다.

1. 도 주최 행사 초청, 도 발행 소식지 제공, 도 주최 강연 강사 초빙 및 공적 홍보
 2.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
 3. 「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
 4.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
 5.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 (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)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결정 전까지 그 사실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도 소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4호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」”로 한다.

충청북도 명예도민 추천서(제3조제2항 관련)

추천받는 사람	성명(한글)	성명(영문)	사진 (40mm × 30mm)	
	생년월일	출생지		
	주소			
	직장명 · 직위/직급			
	연락처 (휴대전화번호)		연락처 (E-mail)	
	(외국인의 경우) 외국인등록번호		사용언어	한국어 구사 정도 상 중 하
추천하는 사람	성명		생년월일	
	연락처 (휴대전화번호)		연락처 (E-mail)	
	직장명 · 직위/직급		담당자 성명·연락처	
	추천받는 사람 주요 경력 (별지 작성 가능)			
	추천받는 사람 주요 공적 (별지 작성 가능)			

위 사람을 충청북도 명예도민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인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 귀하